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5., 권칠승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 (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1차 정무위원회 (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권칠승의원)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현행법[1]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 개정안이 발의된 5건의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부상자,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본인은[2]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3]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유공자와 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은 6곳에 불과하고, 위탁병원의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하여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에 공공의료기관[4]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전투종사군무원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3) 국가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을 말함.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개정안에 따라 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고, 진료기관 분산효과를 통한 대기기간 감소와 함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유공자의 유가족(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자 제외)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확대되는 경우, 전체적인 진료 인원과 진료 횟수가 증가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재원조달방안이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만 지원하는 현행 의료지원 체계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용은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므로,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관하여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의료기관은 개소당·환자당 진료비 청구액이 높은 종합병원(59%), 상급종합병원(13%)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산정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바,[5]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5건의 개정안 외 다른 법률[6]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들도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언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